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9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임춘대 의원(1명)
찬 성 자: 김동욱, 김원태, 김종길,
김태수, 김혜영, 남창진,
박 석, 신복자,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 도매시장 내 거래 농수산물의 불낙, 판매원표 정정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설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팰릿(pallet) 적재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 종사자가 운용하는 물류운반장비에 대해 적정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고 시장 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 등을 위해 분쟁조정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 나. 팰릿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물류효율화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팰릿 출하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제3항 신설).

다. 도매시장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제4항 신설).

라.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를 정정한 현황을 분기별로 실태조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제52조에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③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 품목별 물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팰릿(pallet: 물품의 적재·하역·보관·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을 가진 수평 받침대) 적재 출하 촉진을 위해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② (생략) <u><신 설></u>	제43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u>
③ (생략)	④ (제3항에서 이동)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② (생략) <u><신 설></u>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 품목별 물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팰릿(pallet: 물품의 적재·하역·보관·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을 가진 수평 받침대) 적재 출하 촉진을 위해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시장은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다.</u>
<u><신 설></u>	제5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매

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3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제3항에 분쟁 조정관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제56조의2(실태조사 등)에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한 것으로 향후 위원회 운영여부¹⁾, 실태조사 추진형태²⁾ 등에 따라 소요비용 변화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서울시 관련 부서(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에 해당 사안을 문의하였으나 검토결과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 1) [안전량에 따른 운영비 소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아닌 경우, 안전량에 의해 회의개최 횟수와 운영비가 달라지므로 향후 예상되는 안전량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검토결과 최근 3년간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된 바 없어 향후 분쟁조정 관련 안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이상 현재와 같은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내부자원 활용 실태조사] 통상 실태조사 추진형태에 따라 비용발생의 여부가 달라지나, 안 제56조의2(실태조사 등)제2항 규정 및 서울시 관련부서(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의견 등을 고려할 시 향후 추진될 조사형태는 내부자원을 활용한 조사로 추정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